

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

(의안번호 제76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8. 26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9. 14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0.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주 문

○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

3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함.

4. 주요골자

○ 별첨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면 2001년 1월 13일 강설에 따른 도로 재설작업 소요경비 및 한해대책 추진사업비 등 10건의 사업에 4억 4,171만 6천원을 계상하여 4억 4,103만 8천원을 지출하고 67만8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음.

-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사용 실과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서 충당한 것은 없는가 또한 예산편성에 편입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가와 그 외 집행상 과오, 과다집행된 예산과 불요 예산이 없었는가 등 지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2. 10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